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제출년월일 : 2001. 4.1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설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개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문의 용어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함 (안 제8조)

나.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 회관시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정비 개선함 (안 제12조 내지 제13조)

라. "3년"으로 되어 있는 여성회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이내"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나. 기 타 :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나목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동조 제2호가목중 "생활보호대상인 여성"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여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1. 사용료 가. (생 략) 나. 생활보호대상자 다. (생 략) 2. 수수료 가.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인 여성 나. (생 략)	제8조(사용료·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1. 사용료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 〈현행과 같음〉 2. 수수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 나. 〈현행과 같음〉
제10조(허가의 취소등)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0조(허가의 취소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상회복)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상회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변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①----------. 다만,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5년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